

제345회 임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 2. 27(화)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516
제출일자	2024. 2. 16.
회부일자	2024. 2. 19.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이철식 의원 외 26명

2. 제안이유

- 중앙정부 및 각종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경상북도가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어야 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공모사업의 적법·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전적정심 검토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공모신청 전 경상북도의회에 사전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한 공모사업 선정 기여부서 및 공무원 등의 포상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관계법령: 붙임

5.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없음

6.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검토 완료

나.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 유발요인 없음

라. 해당부서 의견: 의견 없음(예산담당관실)

리.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7.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 등을 경상북도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그 실익을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공모사업을 분별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시의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총괄

부서” 및 “담당부서”의 정의도 각각 규정함. 이와 함께, 본 조항에서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주체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제2호의 “총괄부서”와 제3호의 “담당부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 명확하지 않은 조문 용어의 의미를 한정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으로써 규정하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제2호와 제3호를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경상북도에서 자체 공모하는 사업¹⁾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경상북도”를 공모사업의 주체로 하는 별도의 조례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을 규정함. 특히 제2호에서는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를 통해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다만 공모사업의 경우 준비단계부터 최종 완료까지 다년도에 걸친 계속사업이 많은 관계로 실제 계획수립시

1) 현재 국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의 경우 도의 총괄부서가 있으나 도 자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총괄 현황에 대한 파악이 힘든 실정임

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에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전 검토 대상을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재정협의 부문에서 검토할 것을 규정함.
- 안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에서는 필요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국비가 포함된 공모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204건, '22년 204건, '23년 276건 등으로 적정성 검토 대상이 다수인 바, 검토 대상을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기준 마련도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 공모사업 현황(공모선정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건 수	204	204	276
연도별 사업비(국비)	1,873	2,351	4,162

- 아울러, 본 조례안은 도지사를 집행의 주체로 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집행의 구체적 방법과 사무분장 등은 도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인 만큼, 총괄부서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의 업무까지 조례로써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항 중 “담당부서의 장”과 제3항 중 “총괄부서의 장”을 각각 “도지사”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의회 보고)에서는 경상북도가 신청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도비 포함 사업과 민간이 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규정함.

- 이와 관련,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의회의 관여가 부당한 것으로 오인될 여지도 있으나 “의결”이 아닌 “보고”이므로 “소극적 관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23년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 1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총 80건으로 전체 공모사업의 29%를 차지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공모사업 사업규모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총사업	10억미만	10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건수(%)	276	82(29.7%)	43(15.6%)	35(12.7%)	36(13%)	80(29%)
금 액 (총사업비)	40,453 2)	314	575	1,043	2,594	35,927

2) 국비 23,726(58.7%), 도비 4,332(10.7%), 시군비 10,384(25.7%), 기타 2,011(4.9%)

다. 종합 검토의견

- 공모사업은 일부 사업의 경우 신청부터 선정까지 자치단체별 과도한 경쟁과 이에 따른 홍보 예산 낭비, 탈락 시 주민 의견 분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경제적 효과 등이 구체적인 공모사업을 선별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재정 운용 등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정 부문에서의 관리 필요성과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조례 제정의 목적이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유치와 관련된 자치단체간 과도한 사전 홍보 금지, 선정 기준의 명확한 제시, 주민 의견 수렴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도 자체의 공통 지침을 향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